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반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과장급 직위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며, 경쟁영향 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고,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업결합과 및 경제분석과”를 “기업결합과·국제기업결합과 및 경제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국내외”를 “국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운용
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3.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국제 기업결합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5.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6. 해외 기업결합 제도 및 심사동향 분석
7.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제9조의2제2항 중 “기업집단정책과·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를 “기업집

단정책과·공시점검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약관심사과·전자거래과 및 할부거래과”를 “약관심사과 및 전자거래과”로, “특수거래과장·약관심사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을 “특수거래과장 및 약관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유통감시팀”을 “기술유통감시과”로, “기술유통감시팀장 및 가맹거래조사팀장”을 “가맹거래조사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술유통감시팀장”을 “기술유통감시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약관심사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을 “약관심사과장 및 특수거래과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총리령 제149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30”을 “3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을 “37”로, 행정사무관 “157”을 “158”로, 행정서기 “23”을 “2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서기관 “30”을 “3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을 “37”로, 행정사무관 “164”을 “165”로, 행정서기 “22”을 “2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9”를 “167”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67”로 하며, 행정주사 “55”를 “5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69”를 “167”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67”로 하며, 행정주사 “54”를 “52”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5급 2명, 6급 4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통감시과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③ (생략)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 · 국제협력과 · 디지털조사분석과 · 시장구조개선과 · <u>기업결합과</u> 및 <u>경제분석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 ----- <u>기업결합과·</u> <u>국제기업결합과</u> 및 <u>경제분석과</u>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내외</u>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7. <u>국내</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u>외국의 기업결합제도 분석 및 검토</u>	<u><삭 제></u>
<u><신 설></u>	⑩ <u>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국제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운용</u> <u>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u>

	<u>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u>
	<u>3.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 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 치 및 이행확인</u>
	<u>4. 국제 기업결합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u>
	<u>5.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u>
	<u>6. 해외 기업결합 제도 및 심 사동향 분석</u>
	<u>7.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 과 관련된 국제협력</u>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9조의2(기업집단국) ① (생 략)	제9조의2(기업집단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업집단국에 <u>기업집단정책 과·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 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u>기업집단정책 과·공시점검과</u> ----- ----- ----- -----.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생 략)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 과·소비자안전정보과·특수거	② ----- -----

래과 · 약관심사과 · 전자거래과
및 할부거래과를 두되, 소비자
 정책과장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특수거래과장 · 약관심사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
 는 서기관으로, 전자거래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⑤ 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약관심사과 및 전자거래
과-----

-----특수거래과장
및 약관심사과장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
호시책의 수립 · 시행

12.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
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1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
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
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

1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
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시행

15.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
정 · 개정

⑧ 할부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2.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
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
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7.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
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
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
조
 20.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삭 제>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시행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

정 · 개정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

축 · 운용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0.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제13조(기업거래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
정책과 · 제조하도급개선과 · 건
설용역하도급개선과 · 기술유용
감시팀 · 가맹거래과 · 유통거래
과 · 대리점거래과 및 가맹거래
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
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제13조(기업거래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술유
용감시과-----

으로, <u>기술유통감시팀장</u> 및 <u>가맹거래조사팀장</u>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⑦ (생략) ⑧ <u>기술유통감시팀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경제분석과장·약관심사과장 및 <u>할부거래과장</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u><신 설></u>	-----<u>가맹거래조사팀장</u>----- -----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u>기술유통감시과장</u>-----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특수거래과장</u>----- -----. 제19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서기관	<u>30</u>	<u>3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8</u>	<u>37</u>	-1
·	·	·	
·	·	·	
행정사무관	<u>157</u>	<u>158</u>	+1
	·	·	
	·	·	
행정서기	<u>23</u>	<u>22</u>	-1
·	·	·	
·	·	·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서기관	<u>30</u>	<u>3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8</u>	<u>37</u>	-1
·	·	·	
·	·	·	
행정사무관	<u>164</u>	<u>165</u>	+1
	·	·	
	·	·	
행정서기	<u>22</u>	<u>21</u>	-1
·	·	·	
·	·	·	

[별표 3]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9</u>	<u>167</u>	-2
·	·	·	
·	·	·	
일반직 계	<u>169</u>	<u>167</u>	-2
·	·	·	
·	·	·	
행정주사	<u>55</u>	<u>53</u>	-2
·	·	·	
·	·	·	

[별표 3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9</u>	<u>167</u>	-2
·	·	·	
·	·	·	
일반직 계	<u>169</u>	<u>167</u>	-2
·	·	·	
·	·	·	
행정주사	<u>54</u>	<u>52</u>	-2
·	·	·	
·	·	·	